

경실련 소비자 이슈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승3길 26-9 | 전화번호 02-766-5624 | 홈페이지 www.ccej.or.kr
발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작성 | 윤철한 팀장 | 발행일 | 2017.09.28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②]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소비자는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

목 차



1. 들어가며	01
2. GMO란?	02
3. GMO 수입현황	04
4. GMO 표시제도	08
5. 정부와 기업의 GMO 인식에 대한 반박	13
6. 국회 입법 현황	19
7. 예외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20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이 수입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먹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예외를 두어 실제로 표시된 가공식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 20년이란 기간은 GMO표시제 논란의 시간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그랬지만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의지 없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기 급급하다면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GMO표시제를 강화를 공약했고,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겠다고 했다.
-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오랜 요구다. 많은 소비자들이 나와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 발암물질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그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고, 그 결과 집단적 소비자피해는 더욱 커졌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과 소비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 국민 없는 정부. 소비자 없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표시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시도입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길 희망한다.

2. GMO란?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며, LMO는 살아(Living)있어 생식,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용어이다.
- GMO는 주로 ‘제초제’와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동종 식물(동물)이나 이종 식물(동물) 간 DNA 조작을 넘어 식물과 동물의 DNA를 혼입하기도 한다.
- 전 세계 작물 재배면적에서 GMO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전체 작물재배 면적의 절반이 GMO다.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재배 현황, 2015년〉

(단위 : 백만ha)

작물	전체 재배면적	LMO 재배면적	비중
콩	111	92.1	83%
목화	32	24	75%
옥수수	185	53.6	29%
유채(카놀라)	36	8.5	24%
기타	-	1.5	-
합계	364	179.7	49%

※ 자료: ISAAA(2015)

-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면적의 43%, 브라질 27%, 아르헨티나 15%로 GMO 재배면적의 84%를 3개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재배면적〉

(단위 : 백만ha)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69	69.5	70.1	73.1	70.9
아르헨티나	23.7	23.9	24.4	24.3	24.5
캐나다	10.4	11.6	10.8	11.6	11
브라질	30.3	36.6	40.3	42.2	44.2
중국	3.9	4	4.2	3.9	3.7
인도	10.6	10.8	11	11.6	11.6

※ 자료: ISAAA(2015)

- GMO종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바이엘(독일), 신젠타(스위스) 등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면서 세계 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 몬산토는 전 세계 종자시장의 1/4, GMO 종자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공룡기업이다.



3. GMO 수입현황

1

얼마나 수입하나

-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만 톤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다.

〈년도별 식용GMO 수입〉

구분	총계 (ton)	대두	옥수수	가공식품
'14 년	2,106,000	988,000	1,100,000	18,000
'15 년	2,199,000	1,062,000	1,118,000	19,000
'16 년	2,141,000	982,000	1,132,000	27,000

※ 출처 : 식약처

- 2017년 9월 현재까지의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의 155건 품종이다.
- 매년 가구당 먹는 GMO는 약 109kg이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옥수수 22kg, 콩 19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우리가 먹는 GMO 가구당 109kg
1인당 옥수수 22kg, 콩 19kg

- 그럼 그 많은 식용 GMO를 누가 수입할까? 업체별 GMO 수입현황은 2016년 9월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GMO 수입을 승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3년 연속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 경실련은 2015년 3월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과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고,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현황, 2011~2016.6〉

(단위 : 건, 톤, %)

수입업체	품목	수입내역		
		건수	중량	비율
(주)CJ제일제당	대두	344	3,133,412	31.98
	옥수수	76	217,353	
	유채	6	61,953	
(주)대상	옥수수	148	2,360,117	22.12
(주)사조해표	대두	128	1,772,143	16.61
(주)삼양사	옥수수	156	1,718,722	16.11
(유)인그리디언코리아	옥수수	130	1,405,275	13.17
기타	대두, 유채	117	1,737	0.02
계		1,105	10,670,712	

※ 출처 : 식약처

○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식약처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CJ제일제당 32%, 대상 22%, 사조해표 17%, 삼양사 16%, 인그리디언코리아 13%로 전체 99.99% GMO농산물을 5대 식품대기업이 수입해 왔다.



- 그럼 이렇게 많이 수입된 GMO농산물은 어떻게 사용될까? 경실련은 GMO농산물을 수입하는 5대 식품대기업에 상세한 사용처와 해당 제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 CJ 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언코리아는 수입한 식용GMO를 하나같이 ‘사료용’, ‘제지나 골판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보내왔다.

	<p>3. 현재 당사는 GMO 대두,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GMO 수입 대두를 가공 시 78%의 사료용 대두박을 생산하여 전량 사료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18%는 대두유를 생산하여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GMO 수입 옥수수의 경우에는 제지 및 공업용 등의 산업용과 사료용, 식품용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p>
	<p>4. 2015년 국내에 총 수입된 GMO농산물은 1천23만7천 톤(식약처 발표기준)이며, 이 가운데 약 90%가 사료용과 산업용(종이·판지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0%만이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도 수입한 GMO 옥수수를 제지, 판지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용도의 경우에는 GMO DNA 및 단백질 제거공정을 거쳐 만 든 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p>
	<p>4. 당사의 수입현황과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기준 당사의 GMO 대두 수입량은 총 352,643톤으로 이 중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만이 DNA 및 단백질이 완전히 제거된 식품산업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p>
	<p>3. 저희 사는 GMO와 non-GMO 옥수수를 수입하여 식품 및 산업 용도의 「중간 소재」만을 만들고 있으며, 최종 소비재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GMO 옥수수를 가지고 만드는 소재는 제지 및 골판지 분야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 사료용 소재 및 일부 기타 식품용 소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산업용 및 사료용 소재는 대부분 국내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기타 식품용은 주로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p>
	<p>3. 당사는 GMO와 N-GMO 옥수수를 수입, 가공하여 중간소재만을 생산하며 있으며, 최종 소비재 제품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된 GMO옥수수 가공품 대부분은 제지/판지용 등 산업용소재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외 일부가 사료용 부 원료 및 식품에 이용되고 있으나, 식품용은 주로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p>

3. GMO 표시제도

1

현행 표시제도

- 법적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관련법에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은 GMO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5.12.31. 고시에 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법률(식품위생법)에 포함시키며 악법을 만들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또한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시가 안 되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 생산, 수입, 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GMO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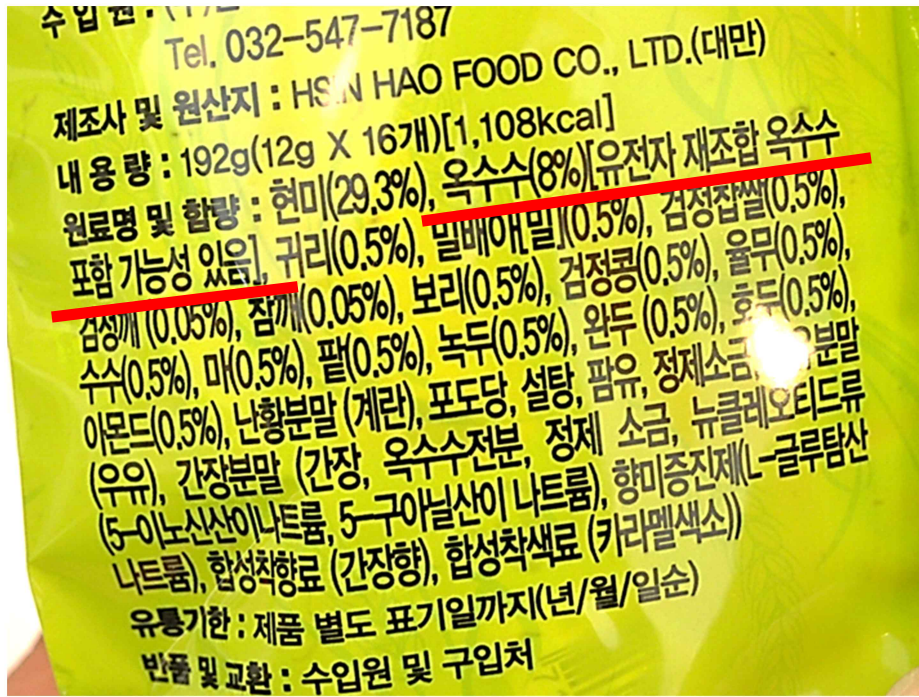
2 GMO 표시 실태

○ 경실련은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GMO표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4년에 과자, 두부, 두유, 라면, 식용유, 장류, 통조림 등 580개 제품 중 GMO표시는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GMO표시가 된 제품은 수입 가공식품으로, 5대 식품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에는 단 1건의 GMO표시도 없었다.

<2014년 GMO표시 실태조사>

구분	세부품목	조사수량	GMO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87	1 (시리얼)
두부류	두부	30	×
두유류	두유	50	×
라면류	라면	93	×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43	×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3	×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11	×
통조림류	참치통조림, 콩치통조림 등	43	×
합 계		580	1

※ 출처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 2017년 2월 식약처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했다.



국민의 몸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정부 3.0

정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p>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p> <h2 style="margin: 0;">보도자료</h2>	배 포	2017.2.2.(목)
	답 당 과	식품 안전정책국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6)	
	과 장	이 * * (☎043-719-2161)	
	연 구 관	이 * * (☎043-719-2153)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

○ 2017년 6년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합은 식약처에 발표한대로 소비자의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GMO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그 결과 438개 가공식품 중 단 2개의 GMO표시만 확인되었지만 수입 가공식품이었고, 5대 식품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에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단 1건의 GMO표시도 없었다.

〈2017년 GMO표시 실태조사〉

구분	세부품목	조사수량	GMO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68	1 (시리얼)
두부류	두부	13	×
두유류	두유	18	×
라면류	라면	36	×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23	×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7	×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23	1 (미소된장)
통조림류	참치통조림, 콩치통조림 등	30	×
합 계		438	2

※ 출처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3 해외 GMO표시제도

○ 대한민국은 GMO표시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GMO표시가 없는 이상한 나라이다. 해외의 GMO표시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비의도적 혼입치 5%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에서는 자율표시제, 버몬트주에서는 GMO완전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GMO표시를 해야 하고, EU는 비의도적혼입치 0.9%, 중국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외 GMO표시제도 현황〉

나라	표시기준	표시식품	비의도적혼입치
한국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와 그 가공품	3%
일본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원료 함량 3순위 이내이며 함량 5% 이상인 경우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표시	5%
미국	연방 : 자율표시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표시	-
	버몬트주 :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수수와 그 가공식품	0.9%
EU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와 그 가공품	0.9%
중국	유전자변형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대두, 옥수수, 유채, 토마토와 그 가공품	0%



4. 정부와 기업의 GMO 인식에 대한 반박

Q1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다

- 정부와 기업은 지난 20년 동안 GMO표시제도 개선요구에, 늘 '안전성'을 내세워 개선목소를 회피했다.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을까?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흐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소비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알권리가 중요한 표시사항이다.

〈식품 표시 내용〉

제 품 명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 ○○시○○구○○로 ○○길○○
제조일자 or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 (포장)재질	○○○○○
품목보고번호	○○○○○○○○○○○○○-○○○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GMO의 안전성을 떠나 종교, 윤리,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GMO를 먹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 2012. 생물학자 세라리니 교수가 이끄는 프랑스 대학의 연구팀이 200마리의 쥐를 상대로 2년 동안 GMO 옥수수를 먹이로 준 실험 결과 약 150마리에게 악성종양이 발생했음

○ 현행 GMO표시제는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관련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 표시는 소비자 알고 싶은 거,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알권리가 핵심이다.

Q2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기 어렵다



- 최근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방송이 나와 큰 충격을 준바 있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가루에 비의도적 혼입치 3%이내의 GMO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되었지만,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선바 있다. 밀가루에 GMO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허술한 GMO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 정부의 약속이다. 과거 비의도적혼입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고시로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이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공표하면서 은근슬쩍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제3조(표시기준) ③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세부실시요령 등)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

※ 식약처 고시 제2013-143호, 시행 2013.4.5.

- 정부와 기업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면, NON-GMO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실련이 한국농업유통공사에서 수입·승인하고 있는 대두의 비의도적혼입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0.22%에 그쳤다.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

〈대두 수입 실태조사〉

년도	건수	비의도적 혼입치(%)	총계(kg)	총금액(원)	1kg당 가격(원)
2010	26	0.31	231,150,619	145,291,613,815	628.56
2011	112	0.14	251,325,107	181,232,352,448	721.11
2012	59	0.18	278,560,988	222,997,385,585	800.53
2013. 5	31	0.25	182,330,978	147,171,918,056	807.17

※ 자료 : 한국농업유통공사(aT)

Q3 관리가 불가능하다

- 정부와 기업은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표시를 예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GMO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공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GMO표시는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에도 과학적 검증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과학적 검증만으로 GMO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현재 정부가 승인·수입하고 있는 GMO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작성한 식품공전에 제시하고 있는 정성평가(GMO 포함여부 검사)는 전체 승인된 농산물의 29%에 불과하다. 정량평가(어는 정도 양이 들어있는 지 확인하는 검사)는 17%에 머물러 있다.

〈GMO 공인검사법〉

품목	승인(농산물)	정성평가	정량평가
감자	4	2	
콩	23	9 (39%)	8 (35%)
면화	28	7 (25%)	
사탕무	1	1	
알팔파	2	2	
옥수수	73	17 (23%)	16 (22%)
유채	13	4 (31%)	
합계	144	42 (29%)	24 (17%)

※ 출처 : 식품공전, 2016.09

- 결국 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등 없이 과학적 만으로는 현재에도 GMO 관리가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처럼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을 통해 GMO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

Q4

GMO표시는 그 나라 현실에 맞게 운영 된다

- 정부와 기업은 GMO표시제도는 식량자급률, 농산물 수입·수출 등을 고려하여 그 나라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도 낮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GMO완전표시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앞서 〈해외 GMO표시제도 현황〉에 적은 것처럼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은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성분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 예외 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성분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도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좋아하는 해외의 나쁜 사례만 가져와 여론을 호도하는,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이라, GMO표시가 되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외면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GMO완전 표시제 할 수 없다고 한다.

○ 매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73.5%

의 소비자가 GMO 식품 섭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GMO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안이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은 숨기려했고, 표시하지 않으려 했고,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단체가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 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행태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누구를 탓 할 게 아니라 먼저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국회 입법 현황

- 20대 국회에는 GMO완전표시제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 의원입법으로 김광수의원 대표발의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안 4개와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시민단체 입법청원안 등 총 5개가 상정되어 있다.
- 국회에 상정되어 5개 개정법률안 모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남인순·윤소하·김현권·시민단체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이 0.9%로 낮추고, 무유전자변형식품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광수의원은 가공식품의 GMO표시를 넘어 식품접객업소의 GMO농산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GMO 공인검사법〉

	김광수의원 안	남인순의원 안	윤소하의원 안	김현권의원 안	시민단체 안
표시제 개선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완전표시제
비의도적 혼입치	-	0.9	0.9	0.9	0.9
GMO 0%	-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 0.9%이내	-	비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식품접객업소	GMO 농산물 표시의무화				

6.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도입

1 고시 개정

-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 돼야 하지만, 먼저 정부가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 혼입치 0.9% 하향조정하고 및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표시 허용해야 한다.

2 국회 입법과제

- 20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치가 0%인 가공식품에 대해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를 하고,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